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제도 정비〉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8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1
III . 검토의견	3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0.
3. 회 부 일 : 2025. 6. 1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

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병대에 별도의 법무병과장 1명을 임명하고, 해병대 검찰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해병대 소속의 군사법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 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 ④ (생략)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 ----- -----

현행	개정안
국방부 직할부대, <u>각 군 본부</u>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6조(군검찰단) ① (생략) ② 국방부검찰단 및 <u>각 군 검찰단</u>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국방부검찰단 및 <u>각 군 검찰단</u>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u>각 군 본부</u>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군검찰단)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군 검찰단</u>(해병대 검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

현행	개정안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u>직할부대</u>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u>각 군 부대</u>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u>각 군 부대</u>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⑥ ~ ⑧ (생략)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u>각 군 검찰사무</u>의 지휘·	----- 가. -----<u>직할부대(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를 포함한다)</u>----- ----- --- 나.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부대</u>----- ----- ----- ----- ----- ----- 다.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부대</u>----- -----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u>검찰사무</u> ----- ----- -----, ----- ----- -----.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u>각 군 소속</u>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u> ----- ----- -----.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u>소속 군 참모총장</u> 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 ----- <u>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u>각 군의</u> 군판사는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u>각 군(해병대를</u>

현행	개정안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생략)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u>해당 군 참모총장이</u> 임명한다.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감독) ① (생략) ② 각 군 참모총장은 <u>각 군 검찰사무의</u>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u>포함한다</u>)의-----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u> <u>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u>-----.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u> 검찰사무--- ----- -----

현행	개정안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 이러한 개정안은 해병대를 육군, 해군 및 공군과 동등한 별도의 군종(軍種)으로 편성하려는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등의 개정에 연계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안¹⁾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병대에 별도의 법무병과장을 두려는 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특수병과에 관한 「군인사법」 제5조²⁾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³⁾.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별도의 해병대 검찰단 창설시 인력운영

1)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 등 4건임

2) 「군인사법」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에 별도의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를 두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687호, 2025. 6. 10. 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상 제한⁴⁾ 및 국정과제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4) 국방부는 현재 해병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해군검찰단에 편성된 해병대 사건 처리 수사인력 2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수인력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운영하는 것은 해군 법무병과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동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법무병과 창설을 전제로 하고 있음.

5) 국방부는 국정과제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02-4)”을 추진 중이며, 그 내용으로 각 군 수사기관(군검찰, 군사경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